

(붙임 2)

# 「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」 개정 관련 FAQ

2024. 8

한국은행

 목 차

**I. 영리목적 이용 허용 관련**

- 1. '영리목적' 화폐도안 이용을 허용한 이유는? ..... 1

**II. 화폐도안 이용 관련**

- 1. 화폐 위·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화폐도안을 이용하는 경우란? ..... 1
- 2. 화폐도안에서 인물만 분리하여 이용하거나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? ..... 2
- 3. 화폐도안에서 인물을 제외하고는 변형하여 사용이 가능한지? ..... 2
- 4. 음란성, 폭력성, 사행성, 혐오감 표현이 포함된 도안이용이란? ..... 2
- 5.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의 도안이용이란? ... 3
- 6. 화폐모조품과 기타 화폐도안 이용과의 차이점은? ..... 3

**III. 이용기준 위반시 책임 관련**

- 1. 이용기준 위반시 받게되는 제재는 무엇이며, 이용자의 책임을 묻는 조항이 추가된 이유는? ..... 4

<참고 1> 화폐도안 이용 가능 여부(예시)

<참고 2> 화폐 위조와 관련된 주요 법률 조항

## I. 영리목적 이용 허용 관련

### 1. '영리목적' 화폐도안 이용을 허용한 이유는?

- ◆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영리목적의 경우에도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안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
## II. 화폐도안 이용 관련

### 1. 화폐 위·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화폐도안을 이용하는 경우란?

- ◆ 화폐도안을 프린터나 복사기 등의 광고에 이용하거나 실제 은행권과 유사한 재질과 크기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.
  - 최근 일부 전통시장 등에서 실제 은행권과 규격 및 도안이 유사한 모조품이 사용된 사례, SNS를 이용한 위조지폐 대량판매 시도 등 다양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화폐 위·변조와 관련된 도안이용은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.

## 2. 화폐도안에서 인물만 분리하여 이용하거나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?

- ◆ 화폐도안 인물만을 별도로 사용하거나 도안인물의 모습을 변형하여 사용할 경우 화폐영정 작가의 **저작인격권(著作人格權)**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도안 이용자가 민·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습니다.
- 따라서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화폐도안에서 인물만을 분리하거나 변형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.

## 3. 화폐도안에서 인물을 제외하고는 변형하여 사용이 가능한지?

- ◆ 화폐도안에서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## 4. 음란성, 폭력성, 사행성, 혐오감 표현이 포함된 도안이용이란?

- ◆ 화폐도안을 음란, 도박, 폭력적인 동영상 및 광고,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동영상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.

## 5.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의 도안이용이란?

◆ **사회통념**(社會通念)이란 ‘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있는 공통된 사고 방식’ 혹은 ‘사회 일반에 받아들여지고 통용되는 상식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○ 따라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의 도안이용이란 **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관점에서 문제의 소지\***가 있는 도안이용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\* 예시 : 불법업체 전단지에 이용,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인물사진과의 합성, 불에 탄 화폐 이미지나 휴지처럼 너덜너덜한 손상화폐 이미지 사용 등

## 6. 화폐모조품과 기타 화폐도안 이용과의 차이점은?

◆ **화폐모조품**은 화폐와 비슷한 재질과 외관을 갖춘 인쇄물이나 복제품을 의미하며 기타 **화폐도안 이용**은 화폐모조품 이외의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.

○ **화폐모조품**은 현용화폐와 외관상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 실제로 이를 위조지폐로 사용하여 처벌된 사례도 있는 만큼 유통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. 이에 한국은행은 화폐모조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**별도로 기준을 마련\***하는 등 위조지폐 유통방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

\* 도안 이용기준 5~9조(화폐모조품 제작, 이용승인 신청, 제작 및 폐기 등)

### Ⅲ. 이용기준 위반시 책임 관련

#### 1. 이용기준 위반시 받게 되는 제재는 무엇이며, 이용자의 책임을 묻는 조항이 추가된 이유는?

- ◆ 한국은행은 이용기준을 위반하여 화폐도안을 이용한 자에게 경고 및 제품 폐기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- 만약 당행의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「형법」, 「저작권법」 등에 따른 민·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
- ◆ 화폐도안에 대한 저작권(著作權)\*은 한국은행이 모두 보유하고 있으나 화폐도안 인물만을 별도로 분리하거나 도안인물의 모습을 변형하여 전시 및 상업적 목적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폐영정 작가의 저작인격권(著作人格權)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.
  - \* 저작권법 제136조 1항 :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
- 화폐영정 작가의 저작인격권 침해시 발생할 수 있는 민·형사상 법적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고자 이용자 책임 문구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.

<참고 1>

### 화폐도안 이용 가능 여부(예시)

카테고리	가능여부	이용사례	이미지	비고
일반적 도안이용	○	십원빵		- 위변조 위험이 없는 주화도안 이용에 해당
	○	화폐도안 활용 티셔츠		- 위변조 위험이 없는 은행권 도안 이용에 해당 (의류·소품 등 모두 가능)
	○	잡지 등 인쇄물 내 화폐도안		- 현용권 규격의 150% 이상 또는 75% 이하로 제작하고 '보기' 문구 기입하여 사용 가능
	X	불에 탄 화폐 이미지를 활용한 광고		-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는 도안이용 사례
	X	도안·인물·만 활용 및 도안·인물·의 변형		- 화폐영정 작가의 저작권격권 침해 가능
화폐 모조품	○	규격요건 <sup>1)</sup> 준수 은행권모조품 (종이)		- 단, 규격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종이소재 화폐모조품은 은행권으로 오인될 수 있어 사용 불가 <sup>2)</sup>
	○	은행권 모조품 (플라스틱)		- 플라스틱의 경우 소재가 은행권과 명확히 상이하여 화폐로 오인될 위험이 없어 제한없이 사용 가능
	○	규격요건 <sup>3)</sup> 준수 주화모조품 (플라스틱)		- 단, 규격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주화모조품은 소재와 관계없이 금융기관 입금시 혼입가능성이 있어 사용 불가

주: 1) 가로와 세로의 규격이 가로 및 세로의 배율을 유지하면서 은행권 규격의 200% 이상 또는 50% 이하  
 2) 영화소품용 등으로 쓰이는 화폐모조품의 경우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별도 승인이 필요  
 3) 주화 규격의 150% 이상 또는 75% 이하

<참고 2>

### 화폐 위조와 관련된 주요 법률 조항

- ◆ 「형법」제207조(통화의 위조 등)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,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- ◆ 「형법」제208조(위조통화의 취득)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◆ 「형법」제210조(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) 제207조에 기재한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